

---

##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

---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200723 민의 평화협정 선포 국제회의

#### 1. 경과

- 2020. 1. 22 NCKK 화해·통일위원회 제안,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 2020. 4. 17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1차 토론회
- 2020. 5. 19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2차 토론회
- 2020. 6~7월 TF 논의와 수차례의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전문,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평화협정 핵심 요소(12 개의 항)로 구성된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완성

#### 2. 선언문 전문

-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종식,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규정함.
- 남북, 북미 정상이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에서 공약한 새로운 평화시대를, 민(民)이 주역이 되어 완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냄.

#### 3.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 기본 원칙에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를 남, 북, 미, 중 4자로 정리함. 이는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데 기여할 것임.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 미, 중은 당연히 당사자이며, 남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남한은 한국전쟁 교

전 당사자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어야 함.

- 기본 원칙에 “유엔헌장 준수, 평화통일 관련 기존 남북합의 존중,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노력 지지”를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분단극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의 목적에도 부합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
- 기본 원칙에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선 비핵화 또는 선 평화협정 정책으로는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을 한 단계 진전시켜내기 어렵다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동시/단계적 실현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하노이 잠정 합의를 되살림으로써 싱가포르 선언을 전면 이행할 수 있게 해줌.

#### 4. 평화협정의 핵심 요소

- 2항1) (남과 북의 경계선) : 국경선이 아니라 경계선으로 표현한 것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휴전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해상과 공중의 경계선은 남북의 합의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은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정해야 하며 기존 북방한계선이 경계선으로 될 수 없다는 민의 통일적 인식을 반영한 것임.
- 4항(불가침), 5항(국교 정상화), 6항(평화협정에 위배되는 국내법 개폐) 등 : 평화협정이 단순히 평화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면 북미, 남북 간 불가침,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사용포기, 북미 국교 수립, 평화협정에 위배되는 법률 개폐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다만 4항(불가침)에서 “당사국들/남북, 북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하여 당사국들 /남북, 북미를 병기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sup>2)</sup>을 고려한 표현임.
- 3항(평화생태지대), 7항(정치·군사적 신뢰 조성), 8항(군축) 등 :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불가침과 무력사용을 금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으므로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군사적 방안을 반드시 평화협정에 담아야 한다는 민의 통일적 인식을 반영한 것임. 3항 기존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 전환은 전쟁과 분단, 죽음과 반목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공존, 생

1)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에는 평화협정에 포함할 내용을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명시함. 이하 각 항은 필자가 편의상 붙인 번호임.

2) 협정 당사국 중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로 명기하자는 의견과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없으나 미중 간 신냉전적 대결을 고려하여 당사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

명과 화해의 상징적 장소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임, 남북 상호간 군사적 긴장과 기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대규모 공격작전을 개시할 능력을 제거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이에 남북 군사합의서(2018. 9. 19)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 훈련 전면 금지, 병력과 무기의 배치 제한 등의 보다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가름하는 징표가 될 것임.

- 9항(비핵화), 10항(유엔사 해체와 외국군 철수) 등 : 2개의 항은 평화협정이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축과 함께 비핵화와 외국군 철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민의 일치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한국 시민사회/ 종교단체 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미는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로 모아낸 것은 민의 평화협정이 이룬 성과 중의 하나임. 10항 (유엔사 해체, 외국군 단계적 철수)은 유엔사 해체가 한국전쟁의 완전 종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함. 그러나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한다”로 모아낸 것은 전적으로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를 주도한 NCKK의 노력에 대한 제안 단체들의 호응과 협조로 이룬 의미 있는 성과임.

#### 4. 민의 평화협정 선언 - 의미와 과제

- 평화협정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자면 법/제도적으로 이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를 이룸. 이는 평화협정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평화상태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대 관계의 청산과 불가침, 관계 정상화는 물론 외국군과 핵무기를 없애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군사적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룸. 이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실현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핵심 요소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동시/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이는 민의 평화협정의 합리성, 현실성, 타당성을 뒷받침 해줌.
- 이후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을 사실적 근거위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교육, 홍보, 사회적 대화,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적, 국내적 지지와 동의를 모아나가야 함. 이를 위해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짜임새 있게 운영 발전시키고, 참여 단체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함.